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56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이원택

송옥주 • 서미화 • 이정문

박홍배 • 이건태 • 김준혁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 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
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	용 등) ①
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	
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	
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	
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2. ~ 7. (생략)

④ ~ ⑧ (생 략)

-----.

1. (현행과 같음)

1의2.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한자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